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50

발의연월일 : 2025. 1. 10.

발 의 자: 박홍배·김문수・박 정

이용우 • 박해철 • 김태선

김남근 • 이수진 • 서미화

맹성규 · 김한규 · 박정현

조승래 · 김정호 · 박지원

김우영 • 백승아 • 정태호

한민수 · 이정헌 · 민병덕

전용기 · 신영대 의원

(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전환을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든 단계에서 순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포장재의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설정하는 등 지속 가능성과 자원 효율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및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

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순환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순환 원료 사용을 지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순환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 하여금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 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 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16조).

법률 제 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료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천연자원 대체원료, 순환원료 등의 사용을 확대하고 제품등의 순환이용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원료생산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생 략)	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료생산자"라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천연자원 대체원료, 순환원료 등의 사용을 확대
<u><신 설></u>	하고 제품등의 순환이용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원료로 전환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원료생산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사를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
<u><신 설></u>	에 따라 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